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립도서관) [시행 2024.12.26.]

(　　제정) 2005.11.14 조례 제371호
(일부개정) 2008.05.09 조례 제464호
(일부개정) 2008.09.16 조례 제4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9.04.20 조례 제508호
(일부개정) 2009.11.16 조례 제53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0.10.18 조례 제557호
(일부개정) 2010.10.18 조례 제557호
(일부개정) 2012.03.05 조례 제6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3.03.11 조례 제700호
(전부개정) 2013.05.24 조례 제713호
(일부개정) 2014.12.22 조례 제782호
(일부개정) 2016.09.13 조례 제906호
(일부개정) 2017.06.29 조례 제977호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1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2.03.31 조례 제1257호
(일부개정) 2023.07.06 조례 제1315호
(일부개정) 2024.12.26 조례 제1387호

관리책임부서명 : 구립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41-74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 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2.3.31.>

1. 삭제 <22.3.31.>
2. 삭제 <22.3.31.>
3. 삭제 <22.3.31.>
4. 삭제 <22.3.31.>
5. 삭제 <22.3.31.>
6. 삭제 <22.3.31.>
7. 삭제 <22.3.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2.3.31.>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6.9.13.>
3. "복사·출력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4. <삭제 2024.12.26.>
5.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 <개정 2024.12.26.>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작은도서관 포함)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의 설치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 도서관 간의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31., 2024.12.26.>
3.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2.3.31.>
②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3.7.6.>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도서관 분야 학계 전문가
3. 작은도서관 운영자
4. 도서관 관련 단체
5.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표
6. 문화 관련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1.12.23., 22.3.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3.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2.3.31.>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구립도서관 운영

제11조(사용허가)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2.3.31., 23.7.6.>
② 제1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료 등) <제목개정 2024.12.26.>
① 구립도서관 시설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개정 22.3.31.>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복사·출력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3.31., 2024.12.26.>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출력하는 경우 <개정 2024.12.26.>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2.3.31.>
③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2024.12.26.>
④ 삭제 <2024.12.26.>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2.3.31.>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2.3.31.>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4.12.26.>
③ <삭제 16.9.13.>

제14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가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2.3.31.>

제16조(관외대출)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2.3.31.>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개정 17.6.29.>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개정 14.12.22>
4. 상호대차서비스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② 희귀자료 · 귀중자료 · 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2.3.31.>

제17조(도서관자료의 구입) 도서관자료의 구입은 해당 구립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구립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구립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 ·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도서관장은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08 · 5 ·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 · 9 ·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 · 4 ·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 · 11 ·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 · 10 ·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1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3. 5. 24>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보며,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7호, 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서관 업무담당과장”을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부칙< 제1257호, 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호, 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87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